

2020년 9월 10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3호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05년 제정 당시와는 달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권역이 확대되어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여 거주권역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 다양하고 폭넓은 기술과 경험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여성과 청년위원의 확보 비율을 높이고자 함.

3. 개정내용

-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동 조례 제3조 제①항 중 “자문단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를 “자문단은”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재난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 mjyong@korea.kr
- 2) 우편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3층 재난예방과)
- 3) 팩 스 : 062-613-26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난예방과(☎062-613-26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조례 제3조 제①항 중 “자문단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를 “자문단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383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2020년 9월 10일(목) 12시부터 9월 20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합니다.

2020. 9. 10.

광주광역시장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2. (주요 행정명령 내용)

- ①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 전면 금지
-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② <집합금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놀이공원(종합유원시설업)
▲ 콜라텍	▲ 종교시설(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
▲ 단란주점	▲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 감성주점	▲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자유업 체육시설 및 대학 운영 체육관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 포함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 뷔페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대형학원(300인 이상)
- ▲ 야구장, 축구장(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 ▲ 청소년 수련시설
- ▲ 목욕탕·사우나
- ▲ 멀티방·DVD방
- ▲ 기원
- ▲ 공공시설<운영중단>
- ▲ 경로당<운영중단>
- ▲ 어린이집<운영중단(휴원)>
- \* 긴급보육 유지

③ <집합제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일부시설 추가 핵심방역수칙 부여)

대상 시설	
▲ 학원(300인 미만)	▲ PC방
▲ 건물주택	▲ 게임장·오락실
▲ 키즈카페(일반·기타유원시설업)	▲ 직업훈련기관
▲ 실내 결혼식장	▲ 카페 → 휴게음식점 확대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형 포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 영화관	▲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 장례식장	▲ 실외 골프연습장
▲ 콜센터	
▲ 공관장·위판장	
▲ 건설현장 구내식당(일반음식점)	
▲ 기업 내 구내식당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 물류창고	
▲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 스터디카페, 독서실	
▲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b>&lt;추가 핵심방역수칙&gt;</b>
	* 학원, 건물주택, 키즈카페: 10인 이상 집합금지
	* PC방, 게임장·오락실: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 직업훈련기관: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및 4㎡당 1명 제한
	* 실외 골프연습장: 타석 띄우기, 라커룸 및 샤워시설 사용금지

④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 금지

3. (기 간) 2020. 9. 10.(목) 12:00 ~ 2020. 9. 20.(일) 24:00

4.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38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연장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장

1. 처분 대상 : 방문판매업체(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475	1	133	34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

※ 대상업체는 휴(폐)업, 변경, 신규등록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업체의 집합 금지

※ 상기 업종에서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집합행위 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개최결과 코로나 19 감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결정. 이에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우려로 지역 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 이용자 간 감염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0.(목) 12시 ~ 9. 20.(일) 24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83호)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9. 10.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기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소비자보호팀 062-613-3740-3743. 끝.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85호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

콜센터 집합제한 행정조치(기간연장) 고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콜센터 집합제한 행정조치(기간연장)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9. 10.

광주광역시장

1. 기 간 : 2020. 9. 10.(목) 12시 ~ 9. 20.(일) 24시

2. 대 상 : 콜센터 68개소

계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비고
68	14	32	13	9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조치내용 :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영업 전/후 시설 및 장비 소독(대장작성)</li> <li>■ 사업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li> <li>*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li> <li>■ 사업장 내 종사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5. 위반 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여성일자리팀 정용복 주무관(☎ 062-613-3592). 끝.